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용자 시행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튼튼론 운전자금 특별용자를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용자규모 : 최대 20,000백만원
- 지원형태 : 용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신청금액은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용자대상
 -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②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용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20년 1/4분기 1.50%, 분기별 변동금리)
- 용자조건

대 상	분 야	한도		상환조건	자격요건 등	
		일반업체	코로나19 피해업체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운전자금	2억원	4억원	5년 (거치기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운전자금	2억원	4억원	5년 (거치기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화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운전자금	2억원	4억원	5년 (거치기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의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코로나피해업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 일반 업체의 선정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설피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킨스노우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 경기장, 스케이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족구장, 케이블건인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운전자금	1억원	4억원	5년 (거치기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용자대상 가능 (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업체 운전자금으로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운동종목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인정한 체육시설 신규 반영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 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관련 사항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유의사항>

- 코로나 19 피해기업 입증 시, 용자 한도 상향 조정 (피해기업 입증은 불임 1 참고)
 - * 대중제 골프장 전환 및 프로스포츠단연고 경기장은 최대 10억원 동일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한하여 동일사업자의 용자한도액(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용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을 초과하여 특별용자 신청 가능
- 부지매입비, 인수권리금 등 부동산구입비로 사용 불가 / 대환의 용도로 사용 불가

■ 용자(대출)방법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용자(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선정 예정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용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 효율적인 자금 집행을 위한 지급기한 지정 * 잔여예산 발생 시 지급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증 및 담보평가 : 용자(대출)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용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담보평가 실시)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예정) : 2020. 03. 12 ~ 2020. 04. 03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최종 일정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접수 공고 재확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ealthyloan@kspo.or.kr (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 * 접수 후 신청결과(반려/접수완료) 이메일 회신 예정, 신청결과 이메일 미확인 시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
 - * 스포비즈 홈페이지(www.spobiz.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제출서류

- 용자신청서 : 홈페이지(www.spobiz.or.kr>공고>스포츠산업용자>신청서 등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작성
- 사업계획서, 용자추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 일체*
 - * 용자분야별 해당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의 “용자신청 제출서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용자(대출)절차



□ 진행절차

- 신청접수를 받아 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통보함
- 지급기한 내에 용자금 수령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기한 내에 용자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 세부절차
 - 공단에서 선정업체 및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 발송 →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용자신청 진행 → 금융기관에서 공단에 최종 용자금 지급 요청(FAX, 이메일로 접수된 공문) → 금융기관은 업체에 용자 시행

■ 유의사항(필독)

- 접수마감일·마감시간 이후 기준 서류미비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용자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용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 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후 국세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으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용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 담보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 담보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자신청 전 해당 신청용자금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상담실

- TEL: 1566-4573, FAX: 02-410-1575, E-mail : healthyloan@kspo.or.kr



붙임 1

코로나19 관련 피해 스포츠기업 요건 세부사항 및 증빙방법

구분	요건 세부사항	증빙방법
직접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상)코로나19 관련 피해 전·후(비교시점)*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u> - 비교시점 : 신청전월과 전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 1개월과 전년 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등 - 기산시점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 ('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신청월 기준 : '20. 3월 ~4월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현금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내역 혹은 통장 입금내역 등
간접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상) 기타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실 증명 기업</u> - 주거래처 생산지연 및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중국 수출입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 입증 가능한 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래처 생산지연 등 납품연기에 관한 서류 및 통보서 등 - 중국 수출입 불가 관련 서류 등 - 기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가능한 서류 등

붙임 2

스포츠산업 튼튼론 특별용자 신청 구비서류 목록

구비서류	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내용	
	운전자금	운전자금	운전자금		
①용자신청서	●	●	●	·공단홈페이지-용자페이지 (다운로드) ·누락없이 빠짐없이 기입	
②사업계획서 (용자신청서 양식 내 포함)	●	●	●		
③용자추천서 (금융기관 날인 필수)	●	●	●		
④서약서	●	●	●		
⑤사업자등록증	●	●	●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해당사업(종목) 명기 필수 대표자 명의로 신청 필수	
⑥법인등기부등본	△	△	△	법인사업자일 경우 필수	
⑦최근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납부영수증 등)	●	●	●	신규업체의 경우 제출 제외 * 당해연도 기 제출 서류와 변동 없을 경우 생략가능	
⑧마케팅권리계약서			△	스포츠서비스업체-스포츠 마케팅업 사업자 필수	
⑨등기부등본 (건물,토지)	●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등본 생략가능	
⑩임대차계약서	△	△	△	사업장을 임대하여 운영중인 업체의 경우 필수 제출	
⑪운전자금 관련 증빙서류 (인건비,수도광열비 등)	●	●	●	운전자금 소요내역 산출근거의 증빙자료 필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수도 광열비고지서, 홍보견적서 등	
⑫세부도면	△			(예상)도면 등 * 당해연도 기 제출 서류와 변동 없을 경우 생략가능	
⑬현장사진	△	△	△	피해사실 관련 입증 필요시 제출	
⑭신고체육시설 증명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증명서	△◎			신고체육시설업체 필수 제출 단, 신규업체의 경우 준공후 제출 가능(보완서류)	
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 시	⑮ 매출액 감소 관련 증빙자료	△	△	△	비교시점 전·후 매출증빙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자료(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생시 현금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등
	⑯ 코로나 피해 관련 증빙 자료	△	△	△	주거래처 생산지연, 중국 수출입피해 등 매출액 이외 간접 피해사실 증빙자료 (단, 간접피해사실의 경우 대상여부 판단은 용자심의회 최종 판단)

※ 참고 : ● 해당분야 필수서류, △ 내용별 해당자에 한함, ◎ 준공후 제출서류(보완서류)

※ 신고체육시설증명서 제출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